|  |  |  |
| --- | --- | --- |
|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주택및노동건설부 령 제22호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이 제20차 상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택및도농건설부 부장 천정가오(陳政高)2015년 1월 22일**제1장 총칙****제1조** 건축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이익과 건축시장의 질서를 유지하며 건설공사의 품질안전을 보장하고 건축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건설공사 안전생산 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거나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이 규정에서 건축업기업이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파이프 설비 설치공사의 신축, 증축, 개축 등 시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기업은 그가 보유한 등록자본, 주요인력, 기 완공 건축공사 실적 및 기술장비 등 요건에 기하여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고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자격허가 범위 내에서 건축 시공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제4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전국 건축업기업의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국무원 교통운수, 수리, 공업정보화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관련 유형의 건축업기업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건축업기업 자격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교통운수, 수리, 통신 등 관련 부서는 동급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를 협조하여 본 행정구역 내 관련 유형의 건축업기업에 대한 자격 관리를 실시한다.**제5조** 건축업기업의 자격은 시공일괄도급자격, 전문도급자격 및 시공용역자격 세가지 계열로 나뉜다. 시공일괄도급자격, 전문도급자격은 공사의 성격과 기술특징에 따라 각각 약간의 자격유형으로 나뉘고 각 자격유형은 규정된 조건에 따라 약간의 자격등급으로 나뉜다. 시공용역자격은 유형 및 등급을 나누지 아니한다.**제6조** 건축업기업 자격기준과 자격별로 도급 가능한 공사의 구체적 범위는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제7조** 국가는 시공일괄도급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단독투자 또는 지분통제 방식으로 용역기업을 보유하는 것을 권장한다. 건축업기업은 기술혁신과 인력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고 선진적인 건설기술, 건축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친환경적으로 시공해야 한다.**제2장 신청 및 허가****제8조** 기업은 한개 또는 그 이상의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기업이 자격을 처음 신청하거나 추가 신청 시에는 최저 등급의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다음 각 호의 건축업기업 자격은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허가한다.1. 시공일괄도급 계열의 특급자격, 1급자격 및 철도공사 시공일괄도급 2급자격;
2.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도로, 수로운송, 수리, 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1급자격 및 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2급자격; 여러 전문분야와 연관된 전문도급 1급자격.

**제10조** 다음 각 호의 건축업기업 자격은 기업 공상등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허가한다.1. 시공일괄도급 계열의 2급자격 및 철도, 통신공사 시공일괄도급 3급자격;
2.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1급자격(도로, 수로운송, 수리, 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1급자격 및 여려 분야와 연관된 전문도급 1급자격은 제외);
3.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2급자격(철도, 민용항공 분야의 전문도급 2급자격은 제외); 철도 분야 전문도급 3급자격; 특수 공사 전문도급자격.

**제11조** 다음 각 호의 건축업기업 자격은 기업 공상등록지의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허가한다. 1. 시공일괄도급자격 계열의 3급자격(철도, 통신공사 시공일괄도급 3급자격 제외);
2. 전문도급자격 계열의 3급자격(철도 분야 전문도급자격 제외) 및 레미콘, 거푸집 비계 전문도급자격;
3. 시공용역자격;
4. 가스 연소기기 설치, 유지보수 기업 자격.

**제12조** 이 규정 제9조에 열거된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공상등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그 중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가 직접 감독·관리하는 건축기업 및 그 직하급 기업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부서의 직접적 감독·관리를 받는 건축기업이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직접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주택노동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초보심사를 끝내고 초심의견과 신청서류를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공시해야 하며 공시기간은 10일(근무일 기준)이다. 그 중 도로, 수로운송, 수리, 통신, 철도, 민용항공 등 분야의 자격과 관련된 경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심사한다.**제13조** 이 규정 제10조에 규정한 자격의 허가절차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이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자격의 허가절차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하여 사회에 공표한다.**제14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건축업기업 자격 신청표 및 상응하는 전자파일;
2. 기업 영업집조 부본의 복사본;
3. 기업 정관의 복사본;
4. 기업 자산증명서류의 복사본;
5. 기업 주요인력 증명서류의 복사본;
6. 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기술장비 증명서류의 복사본;
7.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8.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15조** 기업은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대로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제16조** 자격허가기관은 제때에 자격허가 결정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대중의 조회를 위하여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제17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고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제작하며 정본과 부본은 동일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제3장 연장과 변경****제18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기업이 지속적으로 건축시공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원 자격허가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연장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9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유효기간 내에 기업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 법정대표인이 변경된 경우 공상부서에서 변경 절차를 밟은 후 1개월 내에 자격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제20조** 기업이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로부터 발급받은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 공상등록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내에 관련 변경 증명서류를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2일 내에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전 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격증서의 변경수속은 기업 공상등록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별도로 규정한다. 변경결과는 자격증서 변경 후 15일 내에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도로, 수로운송, 수리, 통신, 철도, 민용항공 등 분야와 연관된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변경 시 변경수속을 처리하는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변경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제21조** 기업에 합병, 분할, 구조조정 및 제도개혁 등 사항이 발생하여 기존 건축업기업 자격 승계가 필요한 경우 건축업기업 자격등급 재책정을 신청해야 한다.**제22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교체발급 받거나 분실당한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교체·재발급 신청서 등 서류를 자격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수속처리를 끝내야 한다.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기에 앞서 대중매체에 분실공고를 내야 한다.**제23조** 기업이 건축업기업 자격의 업그레이드, 자격추가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제출 전 1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의 건축업기업 자격 업그레이드 신청 및 자격추가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한다.1. 본 기업의 자격등급을 벗어나거나 기타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또는 기타 기업이나 개인이 본 기업의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허용한 경우;
2. 건설업체 또는 기업과 결탁하여 입찰하거나 뇌물공여 등 부당 수단을 취하여 낙찰받은 경우;
3.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시공한 경우;
4. 도급받은 공사를 양도하거 불법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경우;
5. 공사건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표준을 위반한 경우;
6.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또는 용역인력의 임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7. 공사 품질안전 사고를 기만, 거짓 보고, 지체 보고하거나 사고현장을 파괴하거나 사고조사를 방해한 경우;
8. 국가의 법률, 법규 및 표준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하는 현장 관리인력 및 기술직 작업인력이 자격증 없이 해당 직종에 종사한 경우;
9. 법에 따라 공사 품질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보수 의무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10)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위조, 변조, 전매, 임대, 대여하거나 기타 형식으로 불법 양도한 경우;(11) 비교적 중한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2회 이상의 일반 품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12) 법률, 법규를 위반한 기타 행위.**제4장 감독·관리****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이 규정에 따라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와 기업의 시장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상급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는 하급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의 자격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 중에서의 불법 행위를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제25조**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직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1. 건축업기업 자격증서, 기업 관련 인력의 등록직업증서·직함증서·직무증서·평가 또는 교육훈련 합격증서, 시공업무 관련 문서, 품질관리·안전생산관리·계약관리·기록문서관리·재무관리 등 기업의 내부관리제도 관련 서류를 제공하도록 검사대상 기업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검새대상 기업에 진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사열할 권리가 있다.
3. 관련 법률·법규 및 이 규정, 그리고 관련 규범과 표준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권리가 있다.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감독·검사요원과 검사대상 기업의 관계자가 서명한 후 기록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제26조**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검사요원은 감독·검사 실시 시 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하며 2명 이상의 감독·검사요원이 동반해야 한다.감독·검사요원은 검사대상 기업의 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기업에게 재물공여을 요구하거나 기업으로부터 재물을 수취해서는 아니되며 기타 이익을 도모해서도 아니된다.관련 기업과 개인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해야 하며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감독·검사기관은 감독·검사의 처리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제27조** 기업이 법을 어기고 건축 활동에 종사한 경우 불법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하고 법 위반 사실, 처리결과 또는 처리건의를 지체없이 건축업기업 자격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로부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에게 휴업정돈, 작격등급 하향조정, 자격증서 회수의 행정처벌을 내리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를 거쳐 법 위반 사실, 처리건의를 지체없이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제28조**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자산, 주요인력, 기술장비 등 면에서 해당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기업이 해당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노동건설 주관부서, 기타 관련 부서는 해당 기업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함과 더불어 사회에 공고해야 하며 시정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시정기간 내에 기업은 건축업기업 자격의 업그레이드, 자격추가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건축업기업 자격기준이 요구하는 요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그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회수할 수 있다.건축업기업 자격증서가 회수된 기업은 자격증서가 회수된 후 3개월 내에 자격허가기관에 기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동일 유형의 자격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제2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1. 자격허가기관의 업무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자격을 부여한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자격을 부여한 경우;
4. 자격 허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신청기업에게 건축업기업 자격을 부여한 경우;
5. 법에 따라 자격증서를 취소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사기, 뇌물공여 등 부당 수단으로 자격 허가를 취득한 경우 응당히 취소해야 한다.**제3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법에 따라 건축업기업의 자격을 말소하고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폐지를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기업은 지체없이 건축업기업 자격증서를 자격허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1.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연장수속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자격증서가 법에 따라 회수,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4. 기업이 말소 신청을 제출한 경우;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건축업기업 자격을 말소해야 하는 기타 경우.

**제31조** 관련 부서는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의견을 지체없이 자격허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자격허가기관은 도로, 수로운송, 수리, 통신, 철도, 민용항공 등 분야와 연관된 건축업기업 자격 허가의 철회, 취소, 증서 회수, 말소 등 상황을 동급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제32조**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신용기록 관리제도를 구축, 완비해야 한다. 건축업기업 신용기록에는 기업의 기본상황, 자격, 실적, 공사 품질과 안전, 계약 이행, 사회대중의 신고 및 법 위반 행위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기업의 신용기록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허가기관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기업 신용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제3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기업에게 행정처벌을 내린 경우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벌의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를 거쳐 국무원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34조** 자격허가기관은 건축업기업 자격허가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제5장 법률책임****제35조** 신청기업이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공하여 건축업기업 자격을 신청한 경우 자격허가기관은 신청을 기각함과 더불어 경고를 주며 신청기업은 1년내에 건축업기업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제36조** 기업이 사기, 뇌물공여 등 부당 수단으로 건축업기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 원 자격허가기관이 자격허가를 철회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3만위안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신청기업은 3년 내에 건축업기업 자격을 재신청할 수 없다.**제37조** 기업이 이 규정 제23조에 정한 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건설공사 품질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처벌기관과 처벌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법률, 법규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하며 1만위안 이상 3망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제38조** 기업이 이 규정에 따라 제때에 건축업기업 자격증서의 변경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기한부 수속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수속을 밟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39조** 기업이 감독·검사를 받을 때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검사를 거부, 방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3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40조** 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에 따라 기업 신용기록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주택도농건설 주관부서와 그 업무인력이 이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그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그 형사책임을 추궁한다.1. 자격기준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청기업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
2.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신청기업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초보심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3. 자격기준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청기업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규정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처리하지 않거나 신고를 접수한 후에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 기업에 대한 자격허가 및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기타 사리를 취하였거나 기타 법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제6장 부칙****제42조**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26일 건설부가 공표한 <건축업기업 자격 관리규정>(건설부 령 제159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住房和城乡建设部令第22号　　《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已经第20次部常务会议审议通过，现予发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住房城乡建设部部长　陈政高2015年1月22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对建筑活动的监督管理，维护公共利益和规范建筑市场秩序，保证建设工程质量安全，促进建筑业的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建设工程安全生产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申请建筑业企业资质，实施对建筑业企业资质监督管理，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建筑业企业，是指从事土木工程、建筑工程、线路管道设备安装工程的新建、扩建、改建等施工活动的企业。　　**第三条**　企业应当按照其拥有的资产、主要人员、已完成的工程业绩和技术装备等条件申请建筑业企业资质，经审查合格，取得建筑业企业资质证书后，方可在资质许可的范围内从事建筑施工活动。　　**第四条**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全国建筑业企业资质的统一监督管理。国务院交通运输、水利、工业信息化等有关部门配合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实施相关资质类别建筑业企业资质的管理工作。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建筑业企业资质的统一监督管理。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水利、通信等有关部门配合同级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实施本行政区域内相关资质类别建筑业企业资质的管理工作。　　**第五条**　建筑业企业资质分为施工总承包资质、专业承包资质、施工劳务资质三个序列。　　施工总承包资质、专业承包资质按照工程性质和技术特点分别划分为若干资质类别，各资质类别按照规定的条件划分为若干资质等级。施工劳务资质不分类别与等级。　　**第六条**　建筑业企业资质标准和取得相应资质的企业可以承担工程的具体范围，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第七条**　国家鼓励取得施工总承包资质的企业拥有独资或者控股的劳务企业。　　建筑业企业应当加强技术创新和人员培训，使用先进的建造技术、建筑材料，开展绿色施工。**第二章　申请与许可**　**第八条**　企业可以申请一项或多项建筑业企业资质。　　　企业首次申请或增项申请资质，应当申请最低等级资质。**第九条**　下列建筑业企业资质，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许可：（一）施工总承包资质序列特级资质、一级资质及铁路工程施工总承包二级资质；（二）专业承包资质序列公路、水运、水利、铁路、民航方面的专业承包一级资质及铁路、民航方面的专业承包二级资质；涉及多个专业的专业承包一级资质。**第十条**下列建筑业企业资质，由企业工商注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许可：（一）施工总承包资质序列二级资质及铁路、通信工程施工总承包三级资质；　　（二）专业承包资质序列一级资质（不含公路、水运、水利、铁路、民航方面的专业承包一级资质及涉及多个专业的专业承包一级资质）；　　（三）专业承包资质序列二级资质（不含铁路、民航方面的专业承包二级资质）；铁路方面专业承包三级资质；特种工程专业承包资质。　**第十一条**　下列建筑业企业资质，由企业工商注册所在地设区的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许可：　　（一）施工总承包资质序列三级资质（不含铁路、通信工程施工总承包三级资质）；　　（二）专业承包资质序列三级资质（不含铁路方面专业承包资质）及预拌混凝土、模板脚手架专业承包资质；　　（三）施工劳务资质；　　（四）燃气燃烧器具安装、维修企业资质。　　　　　**第十二条**　申请本规定第九条所列资质的，应当向企业工商注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提出申请。其中，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直接监管的建筑企业及其下属一层级的企业，可以由国务院国有资产管理部门直接监管的建筑企业向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提出申请。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初审完毕，并将初审意见和申请材料报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自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受理申请材料之日起60个工作日内完成审查，公示审查意见，公示时间为10个工作日。其中，涉及公路、水运、水利、通信、铁路、民航等方面资质的，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审查。　　　**第十三条**　本规定第十条规定的资质许可程序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依法确定，并向社会公布。　　本规定第十一条规定的资质许可程序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依法确定，并向社会公布。　**第十四条**　企业申请建筑业企业资质，应当提交以下材料：　　（一）建筑业企业资质申请表及相应的电子文档；　　（二）企业营业执照正副本复印件；　　（三）企业章程复印件；　　（四）企业资产证明文件复印件；（五）企业主要人员证明文件复印件；（六）企业资质标准要求的技术装备的相应证明文件复印件；（七）企业安全生产条件有关材料复印件；　　（八）按照国家有关规定应提交的其他材料。　　**第十五条**　企业申请建筑业企业资质，应当如实提交有关申请材料。资质许可机关收到申请材料后，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许可法》的规定办理受理手续。　　**第十六条**　资质许可机关应当及时将资质许可决定向社会公开，并为公众查询提供便利。　　**第十七条**　建筑业企业资质证书分为正本和副本，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统一印制，正、副本具备同等法律效力。资质证书有效期为5年。**第三章　延续与变更**　**第十八条**　建筑业企业资质证书有效期届满，企业继续从事建筑施工活动的，应当于资质证书有效期届满3个月前，向原资质许可机关提出延续申请。　　资质许可机关应当在建筑业企业资质证书有效期届满前做出是否准予延续的决定；逾期未做出决定的，视为准予延续。　　　**第十九条**　企业在建筑业企业资质证书有效期内名称、地址、注册资本、法定代表人等发生变更的，应当在工商部门办理变更手续后1个月内办理资质证书变更手续。　　**第二十条**　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颁发的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变更，企业应当向企业工商注册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提出变更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日内将有关变更证明材料报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在2日内办理变更手续。　　　　前款规定以外的资质证书的变更，由企业工商注册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设区的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依法另行规定。变更结果应当在资质证书变更后15日内，报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备案。　　涉及公路、水运、水利、通信、铁路、民航等方面的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变更，办理变更手续的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将建筑业企业资质证书变更情况告知同级有关部门。　　**第二十一条**　企业发生合并、分立、重组以及改制等事项，需承继原建筑业企业资质的，应当申请重新核定建筑业企业资质等级。　**第二十二条**　企业需更换、遗失补办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应当持建筑业企业资质证书更换、遗失补办申请等材料向资质许可机关申请办理。资质许可机关应当在2个工作日内办理完毕。　　企业遗失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在申请补办前应当在公众媒体上刊登遗失声明。　　　　**第二十三条**　企业申请建筑业企业资质升级、资质增项，在申请之日起前一年至资质许可决定作出前，有下列情形之一的，资质许可机关不予批准其建筑业企业资质升级申请和增项申请：　　（一）超越本企业资质等级或以其他企业的名义承揽工程，或允许其他企业或个人以本企业的名义承揽工程的；　　（二）与建设单位或企业之间相互串通投标，或以行贿等不正当手段谋取中标的；　　（三）未取得施工许可证擅自施工的；　　（四）将承包的工程转包或违法分包的；　　（五）违反国家工程建设强制性标准施工的；　　（六）恶意拖欠分包企业工程款或者劳务人员工资的；　　（七）隐瞒或谎报、拖延报告工程质量安全事故，破坏事故现场、阻碍对事故调查的；　　（八）按照国家法律、法规和标准规定需要持证上岗的现场管理人员和技术工种作业人员未取得证书上岗的；　　（九）未依法履行工程质量保修义务或拖延履行保修义务的；　　（十）伪造、变造、倒卖、出租、出借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　　（十一）发生过较大以上质量安全事故或者发生过两起以上一般质量安全事故的；　　（十二）其它违反法律、法规的行为。**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和本规定，加强对企业取得建筑业企业资质后是否满足资质标准和市场行为的监督管理。　　上级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资质管理工作的监督检查，及时纠正建筑业企业资质管理中的违法行为。　**第二十五条**　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的监督检查人员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要求被检查企业提供建筑业企业资质证书、企业有关人员的注册执业证书、职称证书、岗位证书和考核或者培训合格证书，有关施工业务的文档，有关质量管理、安全生产管理、合同管理、档案管理、财务管理等企业内部管理制度的文件；　　（二）进入被检查企业进行检查，查阅相关资料；　　（三）纠正违反有关法律、法规和本规定及有关规范和标准的行为。　　监督检查人员应当将监督检查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和被检查企业的有关人员签字确认后归档。　　**第二十六条**　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的监督检查人员在实施监督检查时，应当出示证件，并要有两名以上人员参加。　　监督检查人员应当为被检查企业保守商业秘密，不得索取或者收受企业的财物，不得谋取其他利益。　　有关企业和个人对依法进行的监督检查应当协助与配合，不得拒绝或者阻挠。　　监督检查机关应当将监督检查的处理结果向社会公布。　**第二十七条**　企业违法从事建筑活动的，违法行为发生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应当依法查处，并将违法事实、处理结果或者处理建议及时告知该建筑业企业资质的许可机关。　　对取得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颁发的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企业需要处以停业整顿、降低资质等级、吊销资质证书行政处罚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应当通过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部门，将违法事实、处理建议及时报送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　　**第二十八条**　取得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企业，应当保持资产、主要人员、技术装备等方面满足相应建筑业企业资质标准要求的条件。　　企业不再符合相应建筑业企业资质标准要求条件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应当责令其限期改正并向社会公告，整改期限最长不超过3个月；企业整改期间不得申请建筑业企业资质的升级、增项，不能承揽新的工程；逾期仍未达到建筑业企业资质标准要求条件的，资质许可机关可以撤回其建筑业企业资质证书。　　被撤回建筑业企业资质证书的企业，可以在资质被撤回后3个月内，向资质许可机关提出核定低于原等级同类别资质的申请。　　**第二十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资质许可机关应当撤销建筑业企业资质：　　（一）资质许可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准予资质许可的；　　（二）超越法定职权准予资质许可的；　　（三）违反法定程序准予资质许可的；　　（四）对不符合资质标准条件的申请企业准予资质许可的；　　（五）依法可以撤销资质许可的其他情形。　　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资质许可的，应当予以撤销。　**第三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资质许可机关应当依法注销建筑业企业资质，并向社会公布其建筑业企业资质证书作废，企业应当及时将建筑业企业资质证书交回资质许可机关：　　（一）资质证书有效期届满，未依法申请延续的；　　（二）企业依法终止的；　　（三）资质证书依法被撤回、撤销或吊销的；　　（四）企业提出注销申请的；　　（五）法律、法规规定的应当注销建筑业企业资质的其他情形。　　**第三十一条**　有关部门应当将监督检查情况和处理意见及时告知资质许可机关。资质许可机关应当将涉及有关公路、水运、水利、通信、铁路、民航等方面的建筑业企业资质许可被撤回、撤销、吊销和注销的情况告知同级有关部门。　**第三十二条**　资质许可机关应当建立、健全建筑业企业信用档案管理制度。建筑业企业信用档案应当包括企业基本情况、资质、业绩、工程质量和安全、合同履约、社会投诉和违法行为等情况。　　企业的信用档案信息按照有关规定向社会公开。　　取得建筑业企业资质的企业应当按照有关规定，向资质许可机关提供真实、准确、完整的企业信用档案信息。　**第三十三条**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其它有关部门依法给予企业行政处罚的，应当将行政处罚决定以及给予行政处罚的事实、理由和依据，通过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部门报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备案。　　**第三十四条**　资质许可机关应当推行建筑业企业资质许可电子化，建立建筑业企业资质管理信息系统。**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五条**　申请企业隐瞒有关真实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申请建筑业企业资质的，资质许可机关不予许可，并给予警告，申请企业在1年内不得再次申请建筑业企业资质。　　**第三十六条**　企业以欺骗、贿赂等不正当手段取得建筑业企业资质的，由原资质许可机关予以撤销；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给予警告，并处3万元的罚款；申请企业3年内不得再次申请建筑业企业资质。　　**第三十七条**　企业有本规定第二十三条行为之一，《中华人民共和国建筑法》、《建设工程质量管理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对处罚机关和处罚方式有规定的，依照法律、法规的规定执行；法律、法规未作规定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八条**　企业未按照本规定及时办理建筑业企业资质证书变更手续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限期办理；逾期不办理的，可处以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第三十九条**　企业在接受监督检查时，不如实提供有关材料，或者拒绝、阻碍监督检查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并可以处3万元以下罚款。　**第四十条**　企业未按照本规定要求提供企业信用档案信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可处以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第四十一条**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对不符合资质标准规定条件的申请企业准予资质许可的；　　（二）对符合受理条件的申请企业不予受理或者未在法定期限内初审完毕的；　　　　（三）对符合资质标准规定条件的申请企业不予许可或者不在法定期限内准予资质许可的； 　　（四）发现违反本规定规定的行为不予查处，或者接到举报后不依法处理的；　　（五）在企业资质许可和监督管理中，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以及有其他违法行为的。**第六章　附 则**　**第四十二条**　本规定自2015年3月1日起施行。2007年6月26日建设部颁布的《建筑业企业资质管理规定》（建设部令第159号）同时废止。 |